

14-하-3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공시시기】: 2024년 10월

【공시방법】: 간접입력(한국교육학술정보원)

【공시내용】: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

【공시양식】: 교육부 제출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4년)

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	
정보보안	개인정보보호

■ 작성지침

【정보보호 수준진단】: 정보보안 수준진단(「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 제94조(정보보안 수준진단)),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(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12조(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))에 의거하여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결과

【정보보안】: 당해연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점수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

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/ISMS-P) 획득 시 ISMS(범위, 유효기간) 또는 ISMS-P(범위, 유효기간)으로 표기

【개인정보보호】: 당해연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

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 획득 시 ISMS-P(범위, 유효기간)으로 표기

【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】: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등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내용 표기

- 미실시: 당해연도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미실시
- 미흡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미만
- 보통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70점 이상 ~ 80점 미만
- 우수: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80점 이상
- ISMS(범위, 유효기간): ISMS 인증을 받은 경우
- ISMS-P(범위, 유효기간): ISMS-P 인증을 받은 경우
- ※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포함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경우 표기 필요
(예: ISMS(학사, ~2024. 12. 31), ISMS-P(학사, ~2024. 12. 31))

■ 참고사항

-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는 교육부(정보보호 수준진단 종합관리시스템)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 - 교육부 수준진단 대상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* 및 제30조**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(단,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수준진단 자가점검 결과를 제출한 대학은 포함)
 -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- **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(대학원대학):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원만을 두는 대학(이하 “대학원대학”)
 - 수준진단 절차: 대학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자체진단 후 교육부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
 - 수준진단 횟수: 연 1회
-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미공시